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3일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운영관리자에게 부과된 분기별 입주 현황 및 운영 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관리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현황 및 운영 상황 자료 제출 규제 폐지(안 제9조)
-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관리자의 입주현황 및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 규제를 폐지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관리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

3. 의견제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전화 : 042-481-4549, Fax : 042-472-3282)